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5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에 참여할 마을 또는 마을기업(이하 “참여마을”)을 선정하고자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차)

1 지원사항

- **지원자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 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 미만이어야 함
-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지원내용

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10개 사업자 총 150억원 내외

-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총사업비의 90%, 금리 1.75%) 중 “햇빛두레 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 세부 금융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 참고

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고시”)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 16에 따른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의 우대가중치 부여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행정리)이 속한 광역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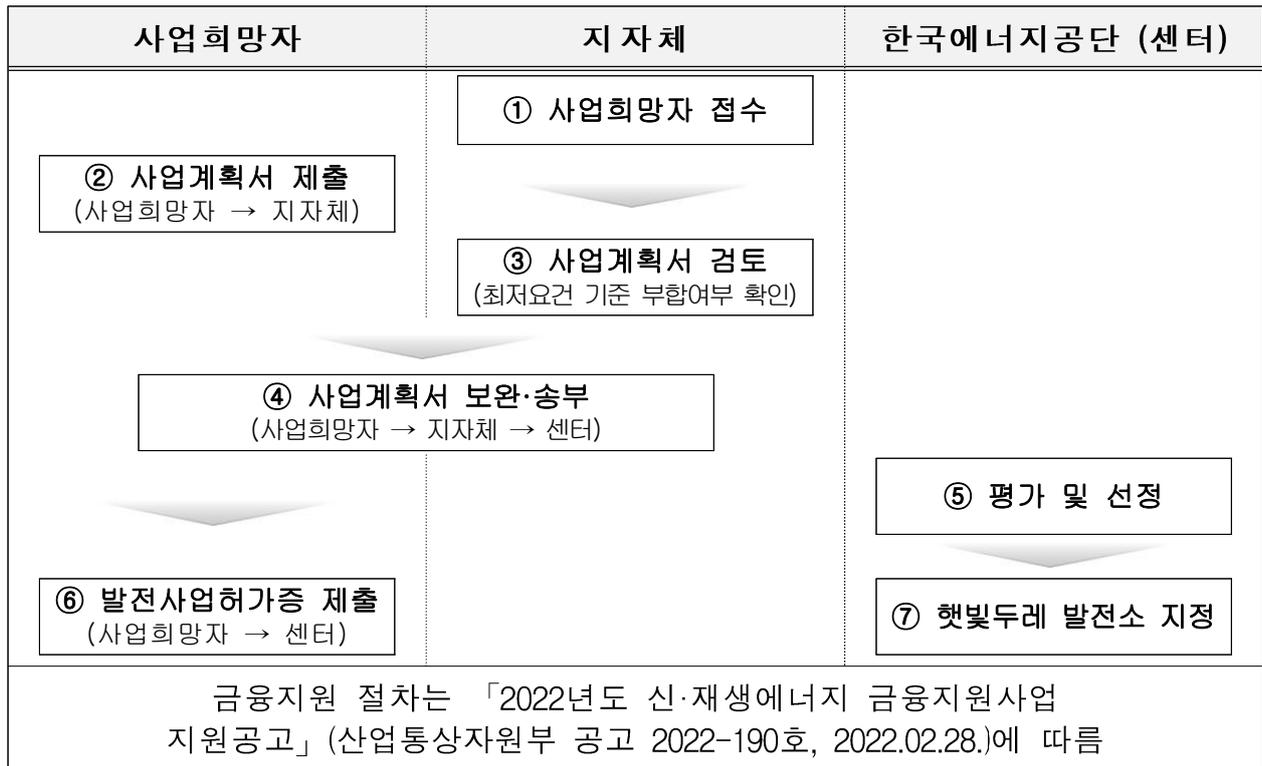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청기간** : '22. 2. 28.(월) ~ '22. 4. 29.(금)

□ 참여마을 선정 및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절차

- ① 사업희망자 접수 : 광역지자체에서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접수
- ②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③ 사업계획서 검토 : 지원자격 최소요건 해당여부를 지자체에서 검토
- ④ 사업계획서 보완·송부 : 지원자격 충족토록 보완하여 지자체에 제출
- ⑤ 평가 및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참여마을로 선정
- ⑥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참여마을이 발전사업허가 획득 후 센터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 ⑦ 햇빛두레 발전소 지정 : 참여마을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최종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평가 및 선정

- (평가) 사업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송부되어,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 (선정)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취득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점수 75점 이상을 획득한 상위 7개 사업 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로 선정
- (건물태양광 우선선정) 건물태양광을 50kW 이상 설치하는 사업 희망자(이하 “건물태양광 설치자”)는 참여마을로 우선 선정
 - * 건물태양광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 2]에 따른 설치유형 중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 하여 설치하는 것
 - ** 평가점수 75점 이상 획득한 상위 5개 건물태양광 설치자를 참여마을로 우선선정, 남은 참여마을은 전체 사업희망자(우선선정 시 6위 이하 건물태양광 설치자 포함) 간 경쟁을 통해 선정

3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은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참여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의 신청 및 고시 제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사업희망자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호, 2022.02.28.)에 따른 사항 및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자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붙임]에 따른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는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희망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단, 다음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을 위한 지원 자격 및 [붙임]의 최소 요건 항목을 충족하고, 평가항목별 점수가 각각 하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사업자에게 사업 변경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를 입증한 경우
-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차) 주요 변경사항**

- ◇ (투자금 비율)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 비율 :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 10%
- ◇ (부지 혼합)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 (평가기준) 지자체 참여도(가산점) 내 지자체 조례개선(이격거리 등) 명시

4 기타 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규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822)
혹은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 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7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4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249-1935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23	033)256-3914
세종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901-6011	043)901-6009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5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99	063)906-6998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7	062)223-2362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999-6811	051)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9	053)751-0555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3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909-0305	064)747-2682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평가 (40)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주1)}	670kg-CO ₂ /kW 초과 830kg-CO ₂ /kW 이하 : 3점 670kg-CO ₂ /kW 이하 : 5점 (최소 요건 : 830kg-CO₂/kW 이하)^{주2)}	5
	참여 마을주민 수	30인 이상 40인 미만 : 3점 40인 이상 50인 미만 : 4점 50인 이상 : 5점	5
	건물태양광 ^{주3)} 설비용량	50kW 미만 : 3점 50kW 이상 100kW 미만 : 4점 (우선선정) ^{주4)} 100kW 이상 : 5점 (우선선정)	5
	자기부지 ^{주5)} 설비용량	다음 계산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 [자기부지설비용량(kW)] ÷ [전체설비용량(kW)] × 15 * 자기부지설비용량은 자기부지에 설치한 설비용량(kW)을 말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5
	시공기업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 : 5점 시공기업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 5점	10
사업계획서 평가 (60)	사업의 실시능력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상황, 자금조달 계획(금융 지원을 위한 담보력 확보 등)의 구체성 등 사업의 진행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를 평가	20
	비용절감	인버터 등 설비개수 감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하,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 내역을 평가	15
	수익의 배분	발전수익에 대해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 을 확인하여 수익의 독점여부에 대하여 평가 (최소 요건: 주민참여 공급인증서 가중치 0.2에 대한 수익은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마을주민에 배분)	15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	10
합 계			100
가산점 (10)	지자체 참여도	지자체 주도로 시공기업 매칭(2점), 주민과 협의회 구성(2점), 지자체 산하 에너지센터 참여(2점), 지자체 조례 개선(이격거리 등) 등 기초·광역 지자체 기여도 (4점)에 대하여 평가	10

주1)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항목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주2) 빨간색 표기는 최소 요건으로서 필히 충족

주3) 건물태양광 : 고시 [별표 2]에 따른 설치유형 중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 하는 경우

주4) 우선선정 : 건물태양광 50kW 이상 설치하는 상위 5개 사업희망자를 참여마을로 우선 선정

주5) 자기부지 :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소유한 마을주민 명의의 부지, 또는 공공부지

□ 시공기업 신용도 배점기준(총점 5점)

구 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5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5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BB+, BB0, BB-	3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하, 미제출	0

※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22.4.29)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22.4.29)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0점처리)
-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주)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5점)

① 설치용량(3점)

한도	태양광(kW)	배점
3점 한도	3,000이상	3
	1,000~3,000미만	2
	1,000미만	1

② 설치개소(2점)

한도	태양광	배점
2점 한도	100개소 이상	2
	100개소 미만	1

※ 시공실적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낮은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를 기준으로 배점을 산정함)
2. 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확인서나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실적 인정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공실적의 인정여부는 센터에서 판단하여 정함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도급종류,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별도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필요시 센터에서 현장확인)
 -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 면제
5.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에 실적이 있는 경우 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로 제출가능
 -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하며, 소비자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도급종류, 용량, 관리번호 등 기입을 필수
 - 공고일 이전의 설치확인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향후 평가 시 확인)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모집공고일~22년 4월 29일까지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8. 태양광 설비가 2kW/개소 미만인 경우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는 아래와 같이 따름
 - 시공실적 설치개소는 3kW당 1개소로 인정, 설치용량은 30%만 실적 인정
 - * 태양광 0.3kW 설비 12개소 시공한 경우, 실적개소 1개소(0.3kW x 12개소 / 3kW)인정 및 설치용량 1kW(0.3kW x 12개소 x 0.3)적용(소수점아래 버림)